

(참조)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일자 및 재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상임위의결:1991.11.21)

(본회의의:1991.11.25)

다. 재회부일자 : 1991년 11월 26일

3. 제 안 사 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가.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연극,영화,음악등)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 함.

나.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관을 두며,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다.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하되 회관의 설립목적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함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라. 충청북도 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흡수 통합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

5. 검 토 의 건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검토한 바,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의해 학생회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제출 승인안인 관장을 “지방서기관”에서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동법 제42조1항에 의하면 지방교육기관의 공무원 배치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두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총무처, 경제기획원등 부처간의 협의하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함.

나. 또한 동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광주, 전북)의 경우 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균형유지에도 다소 문제가 있음.

다. 그러므로 충청북도교육감의 명의로 제출된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항의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라는 조항을 “장학관 또는”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다루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수 정 안 : 별 첨

7. 조 례 안 : 별 첨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출 (안)	수정 (안)
제4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u>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4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p>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